

**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
중미 공화국들 간의
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
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**

2025. 1.

관 계 부 처 합 동

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의 결과

- 과테말라의 가입으로 인한 전체 세수입은 협정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약 **254.1억 원** 증가 예상
- 관세 철폐 등으로 인하여 협정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약 35.2억 원*의 세수입 감소 (직접효과) 예상
 - * 관세수입 감소에 따른 수입분 내국세(수입분 부가가치세 등) 감소액 5년간 연평균 약 1.6억원이 포함된 금액
 - 반면, 과테말라의 가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협정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약 289.3억* 원의 세수입 증가(간접효과) 예상
 - * 경제성장을 통한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소득세 세입 등의 증가를 모두 포함
 - 다만, 이러한 세수 증대 규모는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참여로 인한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느냐 또는 연차별 GDP 증가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(단위: 억원)

구 분 \ 연 도*	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지출	지출수반요인 없음							
	소 계(A)							
수입	○ 세수 감소	△19.4	△28.0	△36.7	△42.8	△48.9	△175.8	△35.2
	○ 세수 증가	82.9	205.6	294.2	389.7	474.3	1446.7	289.3
	소 계(B)	63.5	177.6	257.5	346.9	425.4	1270.9	254.1
총 비용(A-B)		△63.5	△177.6	△257.5	△346.9	△425.4	△1270.9	△254.1

* 2025년 발효되는 경우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항목	주요내용
1	세수 감소(직접효과)	관세 철폐 등으로 인하여 협정 발효 후 세수입 감소
2	세수 증가(간접효과)	경제성장을 통한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소득세 세입 등의 증가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항목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세수 감소(직접효과)	○	-
2	세수 증가(간접효과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○ 성장률 증가전망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GDP 성장률(발효후 5년까지 0.0157%p) 이용
○ 산출방식 :
- (직접효과) 2022년 관세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입의정서 부속서1의 관세인하 및 철폐 일정에 따라 직접적인 관세수입감소 효과를 추정하고, 수입분 내국세는 관세수입액의 9.9%로 가정
- (간접효과) 성장률 증가전망을 토대로 경제성장 확대에 발생하는 법인세, 소득세 등의 증가를 모두 세수입 증가로 추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○ 산출금액 : 254.1억원
- (직접효과) 연평균 △35.2억원
- (간접효과) 연평균 289.3억원

IV. 부대의견

○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	실장·국장
원선희	손민호	이종수	최재영 관세정책관

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원선희	044-215-4473	seonhye95@korea.kr

*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

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재원조달방안

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- ☐ 해당없음(해당 비준동의안은 조약으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 법안과 다르므로 재원 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II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- ☐ 해당없음(해당 비준동의안은 조약으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법안과 다르므로 재원 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III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1.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- ☐ 해당없음

IV. 부대의견

- ☐ 해당없음

V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협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
-	-	해당사항 없음

VI. 작성자

- ☐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	실장·국장
원선희	손민호	이종수	최재영 관세정책관

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원선희	044-215-4473	seonhye95@korea.kr

*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

첨 부

**과테말라 한-중미 FTA 가입에
의한 세수입 변화 추정**

과테말라 한-중미 FTA 가입에 의한 세수입 변화 추정

2024. 1.

1. 세수 효과

가. 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
- ☐ 과테말라가 한-중미 FTA에 가입함으로써 인해 우리 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우리나라 관세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.
 -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과테말라와의 교역에 적용되던 관세율이 인하 혹은 철폐되면서 관세세수가 감소하게 됨.
 -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기존 중미 5개국 평균(95.6%) 대비 낮은 95.3% 품목을 개방함¹⁾.
 - 기존 중미 5개국 : 니카라과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파나마
- ☐ 부수적으로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경우 GDP증가에 따른 간접적(2차적)인 세수입 증가가 예상됨.
 - 우리나라와 과테말라 간의 교역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GDP가 추가로 증가하고 이러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-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과테말라는 중미 5개국 평균(95.4%) 대비 높은 95.7% 품목을 개방하기로 합의함²⁾.

나. 관세율 인하 및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변화

1) 관세율 인하 등에 의한 세수입 변화

- ☐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인해 과테말라에 적용되던 관세율이 인하 혹은 철폐되면서 이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와 관세수입 감소에 의한 수입분 내 국세 수입 감소를 고려할 수 있음.

1)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, “과테말라와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가입 협상 타결” 2022년 9월 5일.
2)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, “과테말라와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가입 협상 타결” 2022년 9월 5일.

-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관세 수입 감소 효과
- 관세가 부과된 이후 추가적으로 부과되던(surtax) 부가가치세, 교육세 등 내국세 세수 감소 효과
-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에 의해 관세수입은 연평균 약 42.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- 2022년 관세수입액을 기준으로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에 따라 품목별로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진행될 경우 연평균 약 40.5억 원의 관세수입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인해 과테말라로부터 수입되던 바나나(HS 0803.90.000) 등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면서, 과테말라 수입물품으로부터 징수되던 관세수입이 감소함.
-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, 교육세 등 내국세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연평균 약 1.7억 원 예상
 - 수입분 내국세는 관세수입액의 9.9%로 가정하여 추정
 - 수입분 내국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나나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에 적용함.
- 관세수입 변화는 현재의 관세율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과테말라가 한-중미 FTA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 규모를 의미함.

표 4-7.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관세수입 변화 추정

(단위: 억 원)

	관세수입 감소 효과	수입분 내국세 감소 효과	합계
1~5년차	-33.6	-1.6	-35.2
6~10년차	-47.4	-1.8	-49.2
연평균	-40.5	-1.7	-42.2

주: 1) 2022년 관세수입액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에 따라 관세수입 감소액 추정
 2) 수입분 내국세는 관세수입액의 9.9%로 가정
 3) 수입분 내국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나나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에 적용함.

2)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변화

- ☐ 과테말라가 한-중미 FTA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추가적으로 세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됨.
 - 과테말라와의 교역 증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추가로 성장하여 세수입이 증가하게 됨.
 - 추가적인 관세인하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 성장 효과는 산업간 경쟁 심화,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력 향상, 그리고 관련 제도들의 정비 등을 통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우리나라가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의 활용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.
- ☐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의 성장효과 추정치에 따르면 실질GDP는 발효 10년까지 약 0.0157% 추가 증가할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예측하고 있음.
 - FTA 발효 후 10년까지는 GDP가 약 0.0157% 증가 예상
- ☐ 위에서 제시한 GDP 성장률 이용하여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에 의한 경제성장(GDP 증가)에 따른 세수입 증가 규모를 추정함.
 - 경제성장 효과(0.0157%)를 감안하여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함.
 -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부터 10년차까지 추가 성장률 0.0157%를 감안하여 GDP가 매년 0.00157% 성장한다고 중립적으로 가정
 - 이러한 세수 증가는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얼마나 향상되느냐에 따라, 또는 연차별 GDP 증가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.
 - 본 추정에서는 매년 균등하게 경제성장(GDP성장)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지만, 전체적인 GDP 증가율이 동일하더라도 매년 성장률이 상이할 경우에는 연차별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.
- ☐ 이러한 가정 아래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 이후 연평균 약 526.6억 원 (0.05조 원)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됨.

- 참고로 2022년도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는 약 396조 원이고, 2023년도 국세수입은 약 341조 원을 예상하고 있음.

표 4-8.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변화 추정

(단위: 억 원)

	GDP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효과 추정
1~5년차	289.3
6~10년차	763.8
연평균	526.6

-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가 350~400조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.

다. 세수효과 종합

-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에 의해 관세수입은 연평균 약 42.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- 2022년 관세수입액을 기준으로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에 따라 품목별로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진행될 경우 연평균 약 40.5억 원의 관세입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, 교육세 등 내국세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연평균 약 1.7억 원 예상
- 관세수입 변화는 현재의 관세율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과테말라가 한-중미 FTA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 규모를 의미함.
- 이 밖에 간접적으로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에 의한 경제성장(GDP 증가)에 따른 세수입 증가는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발효 이후 연평균 약 526.6억 원(0.05조 원)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됨.
-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가 0.0157%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

□ 결과적으로 관세수입 감소와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증가를 종합해 보면,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인한 세수입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 발효 후 연평균 약 484.4억 원(0.05조 원)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됨.

○ 최근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350~40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,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추정됨.

-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2022년에는 약 396조 원이고, 2023년에는 약 341조 원을 예상하고 있음.

표 4-9.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에 따른 세수 효과 추정

(단위: 억 원)

구 분	세수감소			세수증가	세수변화 (총계)
	관세수입 감소효과	수입분 내국세 효과	소계	성장에 따른 세수증가	
1~5년차	-33.6	-1.6	-35.2	289.3	254.2
6~10년차	-47.4	-1.8	-49.2	763.8	714.6
연평균	-40.5	-1.7	-42.2	526.6	484.4